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89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4.

발 의 자: 박해철·조계원·정태호

서영석 · 이성윤 · 추미애

한민수 · 송옥주 · 강선우

복기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, 국가의 기후변화 감시와 적응대책 마련과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, 학계·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 는 것임(안 제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중앙행정기관의 장의"를 "중앙행정기관의 장, 단체 및 전문가 등의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단체 및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수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기	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
상청장은 관계 <u>중앙행정기관의</u>	<u>중앙행정기관</u>
<u>장의</u>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	의 장, 단체 및 전문가 등의
체계적인 기후 · 기후변화 감시	
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	
기후・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	
등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"기	
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	
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
	<u>이 경우 단체</u>
	및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
	수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
	<u>정한다.</u>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